
 보건복지부		<h1>보 도 자 료</h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5월 18일(수) 조간 (5.17 12:00이후 보도)		
배 포 일		2022. 5. 17. / (총 9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과 장	조 신 행	전 화	044-202-2820
	담 당 자	이 지 현		044-202-282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증평가팀	팀 장	오 유 진		02-3781-3545
	담 당 자	김 동 영		02-3781-3554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시행으로 정부 · 기업이 근로자 건강 책임진다

-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본격 시행 및 온라인 사업설명회(5.20.~31.) 개최 -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이 올해부터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 근로자 건강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3년간 법적 기반 및 운영체계 마련과 함께 기업 현장방문을 포함한 시범사업 운영으로 인증체계 및 지표 검증 등을 실시했다.
- 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1,908시간으로, OECD 평균(1,687시간)보다 2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약 한 달(27.6일)을 더 근무하고 있었다.

- 직장에서의 장시간 근무는 신체활동 부족, 비만 위험 증가 등 건강 위협 원인이 되므로, 근무환경 속 근로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 이에 직장 내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노력하는 기업을 발굴 및 확대하고자 ‘건강친화 기업 인증제도’를 마련했다.
- 제도 시행에 따른 첫 단계로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 5월 20일(금)부터 31일(화)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www.khealth.or.kr/hfwp) 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회 기간 동안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 학계 관계자,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사업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6월 1일(수)부터 15일(수)까지 설명회가 진행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사업 신청 후 사업 신청을 위한 서류는 전자우편(healthfriendly@khealth.or.kr)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 운영 체계>



- 참여 신청을 한 기업은 **인증 심사**(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을 부여받게 된다.
- 건강친화기업은 **대기업(공공기관 포함), 중견기업(기타 법인 및 단체 포함)과 중소기업** 등 기업 유형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신청을 받고,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위한 법적 최소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위한 법적 최소기준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건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총 11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건강친화기업 인증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심사는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해 진행되며, 기업 규모별·인증 유형별 지표를 차등 구성하여 지표별 척도에 따라 산출된 최종 점수가 인증 통과기준 이상이면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받게 된다.
 - 건강친화경영 부문에서는 기업의 건강친화제도 추진 기반 및 경영진의 의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건강친화문화 부문에서는 기업 내 건강친화문화가 얼마나 정착되어 있는지, 그리고 건강증진활동 부문에서는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 직원만족도 부문에서는 신청기업의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친화제도 시행에 대한 만족도가 온라인으로 측정되어, 제도 실수혜자의 직접적 체감도가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 최종적으로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선발된 우수기업의 경우 정부 포상과 함께 우수사례로서 기업홍보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 인증기업은 ESG 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중요시하는 기업으로 인식되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현재 개발 중인 컨설팅 및 직장교육 프로그램을 향후 신청 기업 및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조신행 과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건강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과 사회, 근로자가 상생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본 사업에 앞서 우리 원은 작년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체계 및 지표에 대해 검증하고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감 있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이 기업의 미래’라는 생각이 기업의 보편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 <붙임>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개요
 2. 2022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사업 실행계획
 3. 건강친화기업 인증 심사항목 및 배점
 4.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홍보 포스터

붙임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정의)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 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목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강화하고 건강친화경영과 환경조성을 장려함으로써 근로자 건강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
- (법적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 주요 추진 경과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운영 체계 마련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내 추진과제 선정	건강친화기업 인증 도입을 위한 사전연구 실시	건강친화기업 인증 심사체계 구축	건강친화기업 인증 시범사업 추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시행
법적 기반 마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8.12.13.)	국회토론회 실시 ('19.4.15.) 및 정부 공포 ('19.12.3.)	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마련	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개정 및 시행 ('21.12.4.)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세부기준 고시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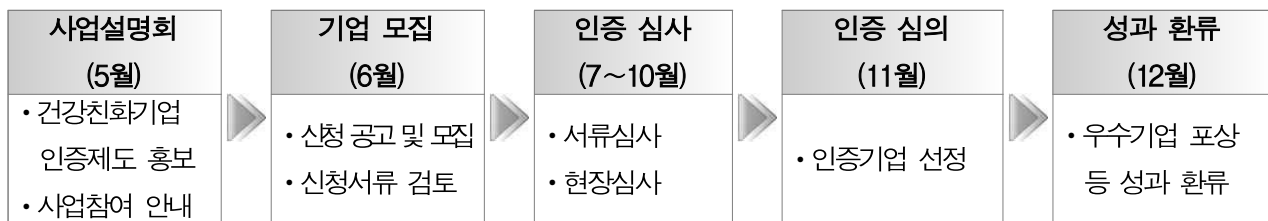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 및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18~22년)
- 정책연구, 사업 지침개발 등을 통한 운영체계 구축('19~20년) 및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제도 추진 정비('21년)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시행('22년~)

붙임 2 2022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사업 실행계획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2.5.~12. (약 8개월)
- (사업대상)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 법인
- (추진절차) '사업설명회' - '기업 모집' - '인증 심사(서류/현장)' - '인증 심의' - '성과 환류'의 인증체계 운영

[건강친화기업 인증 사업 추진절차]



주: 일정 변동 가능

□ 주요 내용

- 인증 신청
 - (신청방법) 사업설명회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구비서류) ① 인증신청서, ② 인증신청 최소기준 점검 결과서, ③ 건강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④ 건강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서, ⑤ 건강친화경영 운영 실적 증빙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⑦ 중소기업확인서(해당 기업에 한함)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최소기준]

연번	최소 기준	세부내용
1	보건관리자 선임	관계법령에 따른 보건관리자 필수 선임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단, 현행법상 필수 선임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 표기)
2	건강진단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으로 정한 주기와 방법 등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합검진을 시행하는 경우도 인정)
3	근로시간	법으로 정한 정규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4	연차유급휴가	근로자에게 법으로 정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5	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제도	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연번	최소 기준	세부내용
6	아동·청소년 및 임신부 근로 제한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부에 대한 야간, 휴일 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7	보건휴가	보건휴가(또는 생리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8	임산부 근로보호	임산부의 근로보호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9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10	태아검진 시간 보장	태아검진 시간 허용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1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후조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인증심사

- (심사방법) 서류 심사(1단계), 및 현장심사(2단계)로 구성

구 분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 주체	• 인증심사단	• 인증심사단
심사 대상	• 인증신청 최소기준을 충족한 신청 기업 전체	• 서류심사를 통해 현장심사 기업 선정 ※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함
심사 방법	• 서면 검토 및 양적 심사	• 현장 방문을 통한 질적 심사
심사 내용	• 기업 자체점검 결과 및 제출 서류에 기초한 심사항목별 채점 • 직원만족도 조사(온라인)	• 서류심사 적정성 점검 • 경영진 발표 및 면담 • 직원 인터뷰 등

[주]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심사항목)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로 구분·평가

심사부문	심사영역	평가지표 항목
건강친화경영	리더십	경영방침 수립·이행, 경영진의 의지, 건강친화경영 인식
	자원	조직 구성, 예산 편성
	협력·소통	직원 의견 반영·환류
	역량 관리·강화	복직·적응 관리, 직원 교육·훈련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경영	건강휴가 지원제도, 근로시간 관리제도, 인센티브
	문화인식공유	건강친화문화 인식
	사회적 책임	건강형평성 제고,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 건강증진 거버넌스 구축운영
건강친화활동	건강친화환경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프로그램 운영·지원	계획수립·이행, 프로그램 효과평가, 지역자원 발굴연계
직원 만족도	직원 만족도	온라인 조사
가산점	가산점	담당 인력의 전문성 등

[주] 기업 규모별·인증 유형별로 심사지표 차등 적용

붙임 3 건강친화기업 인증 심사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부문	심사영역	심사지표	심사배점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 기타 법인 및 단체	중소기업
가. 건강 친화 경영	1. 리더십	1-1. 경영방침 수립·이행	15	15	20
		1-2. 경영진의 의지			
		1-3. 건강친화경영 인식 - 경영진 인터뷰			
	2. 자원	2-1. 조직 구성	10	10	10
2-2. 예산 편성					
3. 협력·소통	3-1. 직원의견 반영·환류	15	15	5	
4. 역량관리·강화	4-1. 복직·적응 관리			10	10
	4-2. 직원 교육·훈련				
나. 건강 친화 문화	1. 건강친화제도	1-1. 건강휴가 지원제도	15	15	10
		1-2. 근로시간 관리제도			
		1-3. 인센티브			
	2. 문화인식공유	2-1. 건강친화문화 인식 - 근로자 인터뷰	5	5	5
		3. 사회적 책임	3-1. 건강형평성 제고	15	15
	3-2.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				
3-3. 건강증진 거버넌스 구축운영					
다. 건강 친화 활동	1. 건강친화환경	1-1.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5	5	10
	2. 프로그램 운영·지원	2-1. 계획수립·이행	20	20	30
		2-2. 프로그램 효과평가			
		2-3. 지역자원 발굴연계			
라. 직원 만족도	직원 만족도	직원 만족도	100	100	100
마. 가산점	가산점	담당인력의 전문성	4	4	
		담당인력 교육		4	4
		인센티브			4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			4
		건강형평성 제고			4
		직원 가족 건강 지원			4
총점			100	100	100

□ 점수 산출방법

○ {(가+나+다 부문 총점) × 0.8 + (라 부문 총점) × 0.2} + 가산점(마 부문)

붙임 4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설명회 홍보 포스터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란?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설명회

2022년 **5월 20일(금)~5월 31일(화)**



대 상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 국민 누구나

참여방법

건강친화기업 인증 홈페이지 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영상 시청
- 인터넷 주소창에 'www.khealth.or.kr/hfwp'를 입력하거나, 하단 QR코드를 이용해 접속 가능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